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10. 8 선고 2021가단3590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0. 8.

주 문

1.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. 7. 15.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2020. 7. 16. 접수 제32791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전선주

